

파일 번호 13-01/2020-IC

인도 정부
통신부
전기통신부
국제협력단

1209, 산차르 바완, 뉴델리,
날짜 2021년 6월 18일

근무처 메모

제목: 인도에서의 통신 및 네트워킹 제품 제조 촉진을 위한 PLI(생산 연계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지침 - 개정 - 규정.

본 부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주제에 대해 2021년 6월 3일자 짝수 번호에 대한 회람을 계속하여 다음 수정이 계획서 지침에서 이루어졌음을 숙지하고 아래와 같이 읽어야 한다:

2.15 글로벌 매출: 기준 연도, 즉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자와 신청자 그룹 회사의 전자, 통신 및 네트워킹 부문 IT/ITES 통합 총수입.

대신

2.15 글로벌 제조 수익: 기준 연도, 즉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인도와 해외 모두에서 신청자 및 해당 그룹 회사의 통합 제조 수익.

2. **3.2조, 3.2.1조, 3.2.2조, 3.2.3조, 10.3.3조**에서 "글로벌 제조 수익"이라는 단어는 "글로벌 수익"으로 대체된다.
3. 본 문서는 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되었다.

(라제쉬 쿠마르 파탁) 부국장(국제협력)
전화 번호: 23717542
이메일: ddgic-dot@gov.in

복사대상:

1. 인도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
2. 모든 주 I 연합 영토
3. 국무조정실
4. 국무총리실
5. 니티 아요그(NITI Aayog)
6. 인도의 감독관 및 감사관
7. 전기통신부 DCC 회원
8. 산업 협회
9. 프로젝트 관리 기관(PMA)
10. 내부순환

파일 번호 13-01/2020-IC
인도 정부
통신부
전기통신 국제협력단

날짜: 2021년6월3일

제목: 인도에서 통신 및 네트워킹 제품 제조 촉진을 위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PLI) 지침.

1. 배경

1.1 인도에서의 통신 및 네트워킹 제품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는 2021.02.24일자 영상통보 번호 13-01/2020-2020-IC에 통보되었다.

1.2 상기 통보의 7조를 따르고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지침을 제도와 함께 읽도록 공식화한다. 통보된 제도와 본 문서에 따른 지침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제도의 조항이 우선한다.

1.3 이들 지침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계획 지침, Inter-alia는 다음을 포함한다:

1.3.1 정의

1.3.2 자격 및 자격

1.3.3 적격성 결정을 위한 투자

1.3.4 애플리케이션 및 온라인 포털

1.3.5 프로젝트 관리 기관(PMA), 권한 있는 비서 그룹(EGoS) 및 관할 기관

1.3.6 PLI에 따른 승인 및 기준 결정

1.3.7 인센티브 산정 및 지출

1.4 이 계획은 2021.04.01부터 유효하다. 제도 가이드라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적격 투자 및 판매는 해당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제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고려하기 위해 계산되어야 한다.

2. 정의

2.1 신청자: 제도 신청자는 2013년 기업법에 따라 인도에 등록된 회사로, 아래 정의된 제도 대상 부문에 따라 적용되는 상품을 제조할 것을 제안하고, 제도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을 한다. 신청자는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 제조 시설을 사용하여 계획 대상 부문에 포함되는 상품을 제조할 수 있다. 전술한 제조는 하나 이상의 인도 지역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이는 DoT에 선행될 것이다. 타점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정이 NPA(Non Performing Asset)로 선언되거나 은행, 금융기관 또는 비은행 금융 회사 등에 의해 고의로 채무불이행자로 신고되거나 사기 행위로 신고된 신청자는 부적격자로 간주된다. 또한, 국가 회사법 재판소(NCLT) 등에 신청인에 대한 어떠한 부실 절차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2.2 신청자 카테고리: 신청은 다음 두 가지 카테고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2.2.1 MSME: 기업들은 인도 정부인 MSME부에 마이크로, 중소기업(MSME)으로 등록했다.

2.2.2 비 MSME: 2.2.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이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2.2.2.1 국내 기업: FDI 정책 2020에 따르면, 기업은 자본의 50% 이상이 거주 인도 시민 및/또는 인도 기업에 의해 '소유'되고 궁극적으로 거주 인도 시민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거주 인도 시민에 의해 '소유'로 간주된다. 이러한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상 "국내 기업"으로 정의될 것이다.

2.2.2.2 글로벌 회사: 글로벌 회사는 위의 2.2.2.1항에 정의된 대로 국내 기업 자격이 없는 회사를 의미한다. 그것은 계획 지침의 2.16조에 정의된 그룹 회사를 포함하거나 단독으로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2.3 응용 프로그램: 신청자가 사업관리청(PMA)/DoT에 대하여 신청서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신청서 양식과 함께 신청서에 의하여 제출한 신청서는 명시한 대로 지원서류 및 신청수수료와 함께 제출한다.

2.4 응용 프로그램 인정 날짜: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프로젝트 관리청(PMA)에 의해 승인된 날짜이다.

2.5 응용 프로그램 승인 날짜: 신청서에 근거하여, 계획에 따른 승인을 받은 날짜는 사업관리청(PMA)이 관할청의 승인에 따라 발급한 날짜이다.

2.6 응용 프로그램 창: 신청 창구는 DoT가 통보한 개방일로부터 제도 포털에(<https://www.pli-telecom.udyamimitra.in>) 통보한 대로 제도에 따른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해당 포털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2.7 판매기준연도: 2019-20 회계연도는 세금 대상 부문 체계(제2.27조에 따라 정의된 "무역 상품"과 구별됨)에 따라 인도에서 제조된 상품의 증분 판매 계산을 위한 기준 연도로 처리한다. 기준 연도에 대한 매출 증분을 추론하고 확인하기 위해 계획 목표 부문 하에서 인도에서 제조된 상품의 매출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얻을 것이다.

2.8 관할 기관: 본 계획에 따라 관할 당국은 수시로 DoT가 통지하는 대로 한다.

2.9 적격 투자: 인도에 대한 투자는 2021.04.01 이후, 그리고 2024-2025년까지만 이루어졌다. 신청자는 2021.03.31년 기준으로 인도에 대한 신청자의 투자를 설명하는 증명서를 지정된 형식에 따라 법정 감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2.10 적격 제품: 신청자가 인도에서 제조한 상품, 제도 대상 부문(부속문서-1)에 포함되며, 제도에 따라 인센티브에 대해 승인된 상품.

2.11 고용: 인도에서 신청인이 만든 일자리로, 생산 공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재료가 생산 시설에 들어갈 때부터 생산 제품이 생산 시설을 떠날 때까지 관련 활동을 한다. 이러한 고용은 신청자 회사의 구내에서 외주로 인해 창출된 직업, 계약직, 견습직 노동자를 포함한다.

2.12 EGoS (A powered Group of Secreties) : EGoS는 국무장관이 의장을 맡고, 2020년 6월 10일자 산업부 및 내부 무역질서 제 P 36017/144/2010호 - 투자촉진을 위한 부처가 인도 관보에 발표한 위원회이다. EGoS는 제도를 감시하고, 제도에 따른 지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하며, 지출이 내각에서 승인한 규정된 지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13 재무 연도: 회계연도는 1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난다.

2.14 불가항력: 신의 행위(자연 재해로 묘사된 사건) 또는 전쟁, 파업, 공중 보건 비상, 폭동, 범죄(과실 또는 잘못된 행위, 예측 가능한 I 계절성 비 및 특별히 제외된)와 같은 특별한 사건 또는 상황이다.

2.15 글로벌 제조 수익: 기준 연도(예: 01.04.2019 ~ 31.3.2020) 기간 동안 신청자 및 신청자 그룹 회사의 통합 제조 수익을 전자, 통신 및 네트워크 부문에서 제공한다.

2.16 그룹 회사: FDI 정책 2020에 정의된 바와 같이 Group Company는 직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을 의미한다:

- (i) 다른 기업에서 의결권의 26% 이상을 행사하고

(ii) 다른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을 50% 이상 임명한다.

2.17 투자: 제도 4.2조에 언급된 신청자의 회계장부에 자본화된 제도 대상 부문과 관련된 "투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2.17.1 공장, 기계, 장비 및 관련 유틸리티에 대한 지출: 여기에는 플랜트, 기계, 장비 및 관련 유틸리티와 공구, 다이스, 주형, 지그, 고정장치(부품, 부속품, 구성부품 및 예비 부품 포함)에 대한 지출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계획 대상 부문에서 다루는 모든 상품의 설계, 제조, 조립, 시험, 포장 또는 처리에 사용된다. 또한 발전소, 기계, 장비 및 관련 유틸리티의 포장, 화물/운송, 보험, 설치 및 시운전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관련 유틸리티에는 캡티브 전력 및 유출 처리 발전소, 청정실, 에어 커튼, 온도 및 공기 품질 제어 시스템과 같은 운영 영역에 필요한 필수 장비, 압축 공기, 물 및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이 포함된다. 또한 관련 유틸리티에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ERP 솔루션을 비롯한 제조와 관련된 IT 및 ITES 인프라가 포함된다. 공장, 기계, 장비 및 관련 유틸리티의 설치 및 설치와 관련된 토목 공사에 대한 지출은 이 장에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신용할 수 없는 세금과 의무는 그러한 지출에 포함될 것이다.

2.17.2 연구개발비(R&D): 계획대상부문 관련 연구개발비 및 제품개발비 여기서 "관련"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기능의 작동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제조하도록 제안된 상품의 전체 가치 사슬의 모든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지출에는 제도 대상 부문(Scheme Target Segments)에 따라 보상되는 재화에 직접 귀속되는 사내 및 캡티브 R&D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동일한 기능의 작동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제조하도록 제안된 재화의 전체 가치 사슬의 11개 단계가 포함된다. 또한 시험 및 측정 도구, 시험에 사용되는 시제품, 설계 도구의 구입, 소프트웨어 비용(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됨) 및 라이선스 비용, 기술에 대한 지출, IPR, 특허 및 연구개발 저작권을 포함한다. 인력경비는 연구개발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연구개발비는 제4.1.4조 및 제4.3.4조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따른다. 모든 신용할 수 없는 세금과 의무는 그러한 지출에 포함될 것이다.

2.17.3 기술 이전(ToT) 계약 관련 지출: 여기에는 계획 대상 부문에서 다루는 상품과 관련된 기술 및 초기 기술 구매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용할 수 없는 모든 세금과 관세는 이러한 지출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ToT는 아래 지침 제4.4.3조에 명시된 제한사항을 따른다.

2.17.4 토지 및 건축에 대한 지출: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공장 건설/건설을 포함함)에 드는 지출은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제도에 따른 적격성 판단에 고려되지 않는다. 제2.17.1조에 이미 기술된 바와 같이 발전소, 기계, 장비 및 관련 전력회사의 설치 및 설치와 관련된 토목공사에 대한 지출이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2.18 제조: 2017년 중앙재화서비스세(CST)법에 따라, "제조"란 이름, 특성 및 용도가 구별되는 (제2.27조에 정의된 "무역품"과 구별되는) 신제품의 출현을 초래하는 모든 방식으로 원자재 또는 투입물을 처리하는 것을 그에 따라 해석된다.

2.19 공산품의 순증가적 판매: 일정 기간 동안 인도에서 제조된 상품의 순매출에서 기준 연도의 계획 목표 부문(제2.27조에 따라 정의된 "무역된 상품"과 구별됨)의 순매출에서 인도 내 생산되는 상품의 순매출액을 뺀다.

2.20 순매출: 순매출은 CGST법(목적에 따라 인상), 할인(현금, 물량, 목표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인도 내 제조 상품에 적용되는 세금(2.27조에 따라 정의된 "무역 상품"과 구별됨)의 총매출망을 대상으로 회계 장부에 따라 그리고 GST 당국에 공개된 대로이다.

2.21 사업관리청(PMA): 전기통신부(DoT)가 임명하는 기관으로서 신청 접수 및 평가, 기준 결정, 적격성 검증, 지급청구 심사 등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방법/문서를 통해 대행하고 본 지침/제도에 따라 작성된다.

2.22 관계 당사자: 관계당사자1이라는 용어는 신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AS)18 - 관계당사자공시" 또는 "인도회계기준(Ind AS)24 - 관계당사자공시"에서 정의한 것과 같아야 하며, 수시로 기업부 또는 기타 해당 기관이 이를 통지해야 한다.

2.23 계획 대상 세그먼트: 계획 대상 부문은 계획의 부속서-1과 같이 지정된 통신 및 네트워크 제품을 표시해야 한다.

2.24 자체 인증 문서: 자체 인증 문서는 이사회가 승인한 신청자 회사의 지정 서명자가 인증한 문서를 나타낸다.

2.25 후계자 관심 대상: 승계인은 신청인의 합병, 감점, 인수, 사업 이전 또는 소유권의 유의적인 변경 후에 형성되는 새로운 또는 재조직된 실체를 나타낸다. 유의적인 변화는 모든 주주가 회사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 모든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2.26 기술 위원회(TC): 관할 당국이 구성하는 기술 위원회.

2.27 상품거래: 신청자 회사와 제품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원자재 또는 투입물 처리가 수행되지 않는 경우, 추가 가치 없이 구입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제도의 목적상 "거래 상품"으로 취급된다.

3. 자격 및 적격

3.1 이 제도에 따른 지원은 계획 대상 세그먼트에서 다루는 인도 내 상품 제조에 대한 기업에만 해당된다. 또한 신청자 회사에 대한 외국인(비거주자) 투자는 개정된 FDI 정책 2020에 따라 수시로 시행되어야 한다.

3.2 자격은 다음과 같이 계획 지침 2.15조에 정의된 글로벌 제조 수익의 자격 기준에 따라야 한다:

3.2.1 글로벌 기업: 기준 연도에 세계 제조 수익은 1,000억 루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준년도 수익이 INR에 통합되지 않은 신청자 그룹사의 경우, 2019년 4월 1일 기준, 2020년 3월 31일 기준 평균 환율로

해당 통화의 수익을 INR로 전환한다.

3.2.2 국내 기업: 기준 연도에 세계 제조 수익은 25억 루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2.3 MSME: 글로벌 제조 수익은 기준 연도에 1억 루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3 자격은 당해 연도 중 최소 누적 증분 투자 임계값과 기준 연도에 대한 공산품의 증분 판매 (계획 대상 부문 적용)에 따라 결정된다.

3.3.1 신청자는 고려 중인 연도에 인센티브를 지출할 자격이 있으려면 기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기준 기준은 본 지침의 제도와 부속서 2에 첨부된다.

3.3.2 신청자가 특정 연도 별첨 2에 따른 자격 기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연도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그 몇 년 동안은 인센티브 이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청자는 그러한 후속 연도에 대한 적격성 기준을 충족한다면, 제도의 존속 기간 중 후속 연도에 지불해야 할 인센티브를 청구하는 것을 제한받지 않을 것이다.

3.4 모든 연도의 증분 투자와 관련하여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해당 연도까지(검토 중인 연도를 포함) 투자 누적 가치를 고려한다. 비록 신청자가 4년 이내에 전체 투자를 하더라도, 그 인센티브는 승인서에 전달된 연간 임계 투자에 기초하여 적격 신청자에게 매년 지출될 것이다.

3.5 어떤 연도의 계획 목표 부문 하에서 적용되는 공산품의 순증분 판매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준 연도의 해당 연도의 계획 목표 부문 하에서 적용되는 공산품의 순매출을 고려해야 한다.

3.6 신청자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중앙정부의 다른 PLI 계획에 따라 적용/사용 가능한 혜택이 있는 경우, DoT PLI 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PLI 제도에 따른 자격은 주/인도의 행정 구역 정부가 시행 중인 다른 제도에 따라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신청자의 증분 투자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해, 본 제도에 따라 적용되는 투자는 다른 PLI 제도에 따른 적격성 결정에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3.7 MSME 범주에 대한 5년 동안의 최대 재정 할당은 100억 루피로만 제한됩니다.

3.8 MSME 또는 비MSME로 신청자의 상태는 선택 시에만 결정되며, 계획 전체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될 것이다.

4. 적격성 판단을 위한 투자

4.1 일반 거래 조항

4.1.1 본 지침의 2.17조에 정의된 대로, 이러한 투자가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제도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4.1.2 제조에 사용되는 소모품 및 원자재에 대한 지출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4.1.3 세금계산서의 날짜는 제도에 따른 투자일로 간주된다.

4.1.4 특정 연도의 경우, 선정 자격과 연간 인센티브 청구에 기초하여 투자 책임자는 해당 연도에 신청자의 회계 장부에 자본화되어야 한다.

4.2 공장, 기계 및 장비

4.2.1 본 지침 제2.17.1조에 정의된 발전소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지출은 제도에 따른 적격성 판단을 위한 투자로 간주한다.

4.2.2 플랜트, 기계 및 장비는 신청자 명의로 구입/임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부 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이 수시로 통지하는 바와 같이, 리스는 신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 19 - 리스" 또는 "인도회계기준(IndAS) 116 - 리스"의 의미 내에서 금융리스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신청자가 핵심 사업이 자금조달이나 장비 임대 계획이 아닌 인도에 위치한 그룹사로부터 금융리스로 얻은 공장, 기계 및 장비는 적격 투자에서 제외된다.

4.2.3 "위험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관리 및 경계가동) 개정 규칙, 2018"에 따라 이 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사용/교체 공장, 기계 및 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잔류 수명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가치 및 잔여 수명을 평가하는 전세 엔지니어의 평가 인증서도 필요하다. 수입품의 경우, 이러한 평가는 세관 평가 규칙 및 회람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공장, 기계 및 장비의 가치는 (세관에서 고정하는 감가상각 규모에 따라, 이러한 공장, 기계 및 장비의 수입 여부와 관계 없이) 저평가된 값과 (인도)차타드 엔지니어 또는 동등한 해외 차타드 엔지니어가 지정한 값보다 낮은 값으로 간주한다. DoT는 그러한 평가를 위해 자체 면허기사를 보유할 권리를 보유한다.

4.2.4 공구, 다이스, 몰드, 지그, 고정장치 및 부품, 부속품, 부품, 부속품 및 예비품이 신청자의 구내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유효한 법적 합의와 함께 이러한 장비/구성 요소를 보관하는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장비/구성 요소는 국외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4.2.5 공장, 기계 및 장비는 관련 세금 및 관세를 납부한 후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통하여 조달/임대하여야 한다.

4.2.6 이 제도에 따라 승인된 발전소, 기계 및 장비는 PMA가 발행한 승인 서한에서 승인된 계획 대상 부문 아래의 물품 제조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제품의 제조를 위한 그러한 기계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신청자가 제도에 따라 장려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매년 기계 사용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2.7 PMA는 비용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인도 부실부도위원회에 등록된 면허기사 또는 모든 평가자의 인증서와 해당 시 관세 규칙에 따라 고려되는 평가에 의존한다.

4.3 연구개발(R&D)

4.3.1 본 지침 제2.17.2조에 정의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도에 따른 적격성 판단을 위한 투자로 간주한다.

4.3.2 신청자는 제조 승인을 받은 제품과 관련된 기술, IPR, 특허 및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정 감사인 인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4.3.3 연구개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관련 세금 및 관세를 납부한 후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통해 조달/허가 받아야 한다. 이는 신청인의 법정 감사인이 인증해야 한다.

4.3.4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출은 총 투자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4.4 기술 협정 반환

4.4.1 본 지침의 2.17.3조에 정의된 기술 계약의 이전(제출될 기술 이전 계약의 사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제도에 따른 적격성 결정을 위한 투자로 간주한다.

4.4.2 신청자는 기술 계약의 이전과 관련된 지출과 관련하여 법정 감사인 인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4.4.3 기술 이전 시 발생하는 지출은 총 투자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4.5 관련 유틸리티

4.5.1 이 지침의 2.17.1조에 정의된 관련 유틸리티에 대한 지출은 이 제도에 따른 적격성 결정을 위한 투자로 간주한다.

4.5.2 관련 전력회사는 이용 가능한 경우 CPWD 요율 일람표에 명시된 요율로 제한되거나, 또는 면허기사가 수행한 평가에 따라 제한된다.

4.5.3 신청자는 관련 유틸리티와 관련된 지출과 관련하여 법정 감사인 인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4.6 관련 당사자 거래: 관계자와의 모든 거래는 수시로 개정되는 회계기준 18의 규정을 따른다.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는 소득세법에 정의된 대로 독립가격이어야 한다.

4.7 신청 및 청구 프로세스 동안 PMA는 제도 지침에 정의된 대로 신청자가 법정 감사자, 전세 엔지니어, 평가자 등으로부터 제출해야 하는 다양한 증명서에 의존합니다. 신청서 및 청구 절차와 함께 제출되는 이러한 증명서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5. 응용

5.1 계획은 DoT에 의해 통지되고 제도 포털(<https://www.pli-telecom.udya.mimitra.in>)에 통보된 대로 개시일부터 신청한다. 신청서는 해당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접수해야 한다.

5.2 관할 당국은 본 계획의 재임 기간 중 언제든지 새로운 신청자를 초청할 권리를 보유한다.

5.3 이 계획에 따른 신청은 인도에 등록된 모든 회사가 온라인 포털의 프로젝트 관리청(PMA)에 신청할 수 있다.

5.4 각 신청자는 제도에 따라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는 **부속문서 1**에 정의된 계획 대상 부문 제품을 하나 이상 신청할 수 있다.

5.5 인도 기술을 탑재한 제품을 보유한 제조업체는 모두 응모할 것을 권장한다.

5.6 신청서는 본 지침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양식 1매트로 작성해야 한다.

5.7 지정된 형식의 신청서를 수령하는 즉시 PMA에 의해 이 효과에 대한 승인이 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승인서의 발행은 장려금을 청구할 권리를 신청자에게 주거나 주지는 않을 것이다. 신청 창을 닫은 후에는 관할 당국이 달리 허가하지 않는 한 신규 신청은 접수되지 않는다.

5.8 신청을 받은 PMA는 이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정보, 문서, 증명서, 신청 수수료 입금 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기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최초 심사 중 신청서에 결여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신청자가 해당 신청서에 부적격으로 표시될 수 있는 불이행으로 인해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심사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최종 후보 신청서 목록은 관할 기관의 승인을 위해 DoT에 의해 추천되어야 한다.

5.9 포털의 애플리케이션 섹션에는 헌신적 투자 및 추정 순제조업 매출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데이터 보안에 적합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5.10 최종 권고는 제도 기간 동안 기본 정보(투자 및 판매), 투자 약속, 최대 적격 매출을 가진 적격 신청자와 관련하여 DoT에 의해 이루어진다. DoT의 승인에 따라 PMA는 신청인에게 지정된 형식에 따라 승인서를 발행해야 한다.

5.11 각 신청서에 대해 환불되지 않는 신청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규정된 대로 전자적으로만 인정된다.

6. 온라인 포털

6.1 모든 신청서는 포털을 통해 프로젝트 관리기관(PMA)에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6.2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제출되면, PMA는 신청자에게 이 제도와 관련된 모든 향후 활동을 위한 고유한 신청서 ID를 발급한다. 모든 지원자는 해당 주제에 대한 향후 서신을 위해 이 고유 ID를 참조할 수 있다.

6.3 DoT는 계획을 위한 온라인 포털 사용에 대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7. 프로젝트 관리기관(PMA)

7.1 이 계획은 프로젝트 관리 기관(PMA)을 통해 수행되며, 프로젝트 관리 기관(PMA)은 비서, 관리, 구현, 지원 및 수시로 도티가 할당한 책임 수행을 담당한다.

7.2 PMA는 다음 사항을 책임진다:

7.2.1 신청서 접수, 승인서 발급, 정해진 기한 내 신청서 심사.

7.2.2 적격 신청자에 대한 공산품 및 투자 순매출 기준 확인 및 적절한 권장 사항 작성.

7.2.3 인센티브 지출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한 투자 약속 기준의 검증.

7.2.4 인센티브 지출 청구 심사 및 관할 기관에 적절한 권고 사항 제시.

7.2.5 지출 청구와 지정된 문서의 조정에 대한 확인.

7.2.6 분기별 검토 보고서 및 기타 정보/문서를 통한 계획 진행 및 성과에 관한 데이터 편집.

7.3 PMA는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정보, 세부사항 및 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7.4 DoT/PMA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선정된 신청자의 연간 기준 적격 투자 및 증분 매출과 관련된 청구에 대한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이 프로세스에는 주로 문서 기반 검증이 포함되지만 DoT/PMA가 결정할 운영 절차에 따라 PMA의 선별적인 물리적 검증/검사도 포함될 수 있다.

8. 권한 있는 비서 그룹(EGoS) 및 권한 있는 기관

8.1 권한 있는 비서 그룹(EGoS)

8.1.1 권한 있는 비서 그룹(EGoS)은 제도를 감시할 수 있으며, 제도에 따른 지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출이 내각에서 승인한 특정 지출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1.2 EGoS는 이 제도에 따른 투자, 고용 창출, 생산 및 부가가치 등과 관련하여 적격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8.1.3 EGoS는 제도 존속 기간 동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센티브 비율, 한도, 계획 대상 부문 및 적격성 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8.1.4 불가항력의 경우, EGoS는 계획 지침에 따른 조항을 수정,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8.2 관할청

8.2.1 관할 당국은 이 계획에 따른 승인을 위해 PMA가 권고하는 대로 신청서를 검토한다. 관할 당국은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8.2.2 또한 관할 당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획 지침의 개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8.2.3 관할 당국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인센티브를 위한 신청서 및 청구서의 승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9. 기준 정보

9.1 제도에 따른 적격성은 정의된 바와 같이 제도에 따라 적용되는 인도 내 제조된 상품의 누적 증분 투자와 순 증분 판매의 문턱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해야 할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인도에서 제조된 상품의 투자 및 순매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9.2 기준선 결정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2.1 투자 기준: 2021년 3월 31일 기준

9.2.2 인도에서 제조된 상품의 순매출 기준(계획 대상 부문 아래 포함):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9.3 신청자는 법정감사인 증명서 및 반납서류 또는 PMA가 청구한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기준서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문서를 자비로 제출해야 한다.

9.4 관할 당국은 PMA가 확인 및 권고하는 기준 정보(투자 및 판매), 약속된 투자 및 계획 기간 동안의 최대 적격 매출에 기초하여 PLI 체계에 따른 신청 승인을 고려한다.

10 PLI에 따른 승인

10.1 DoT가 임명한 프로젝트 관리 기관(PMA)은 승인서를 발급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PMA는 조항 5.8에 정의된 대로 신청서에 대한 초기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계획에 따른 승인의 최종 권고는 제도 기간 동안 기본 정보(투자 및 판매), 투자 약속, 최대 적격한 매출을 가진 적격 신청자와 관련하여 PMA가 DoT에게 권고한다. 이 제도에 따른 지원자의 최종 선정은 담당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티에 의해 이루어진다.

10.2 DoT는 각각 MSME 및 비 MSME 범주에 속하는 10(10) 적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승인을 허가해야 한다. MSME가 아닌 범주에 속하는 10개 신청자 중 최소 3개(3개)의 신청자가 적격 국내 기업이 된다.

10.3 두 가지 신청자 범주 중 하나에 대해 위의 제10.2조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적격 신청자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다음 순서로 순위를 매긴다:

10.3.1 신청자 카테고리: MSME

계획 기간 중 누적 누적 투자액을 기준으로 최고에서 최저까지이다.

10.3.2 카테고리: 비 MSME

계획 기간 중 누적 누적 투자액을 기준으로 최고에서 최저까지이다.

10.3.3 동일 투자수준의 더 많은 신청의 경우, 기준년도 글로벌 제조수입이 높은 신청자(그룹사 포함)가 각 부문별로 검토된다.

10.3.4 위에서 언급한 순위 방법에 기초하여, MSME 카테고리에서 가장 높은 10명의 지원자, 비 MSME 카테고리에서 가장 높은 10명의 지원자(이 중 최소 3개의 국내 기업)를 선정하고 이 계획에 따라 승인을 허가한다.

그림: - MSME가 아닌 범주에 속하는 글로벌 및 국내 기업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상위 10개사 중 국내 3개사 이상이 포함된 경우 최종 순위가 된다. 다만, 상위 10위권 안에 국내 기업이 3개 미만(국내 기업의 지원 대상도 남아 있는 경우), 나머지(10위권 내 3개 중 3개)의 국내 기업을 선정해 최소 3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어느 경우든, 최종 등록 신청 건수는 10건으로 제한될 것이다.

10.4 이 선정은 5년간 전체 재정 한도액인 1219억 5천만 루피 이내에 해당하는 각 범주의 모든 신청자의 최대 적격 매출에 대한 총 인센티브를 받는다. 제3.7조 또는 다른 조항과 같이, 최대 적격 매출에 대해 지급되는 총 인센티브가 각 범주의 재정적 한계보다 높은 경우, 선택되는 신청자의 수는 그에 따라 감소될 것이다.

10.5 각 범주의 모든 신청자에게 최대 적격 매출에 대해 지급되는 총 인센티브가 각 범주의 재정 한도보다 적을 경우, 관할 당국은 5년 동안 루피 1219억 5천만원의 전체 재정 한도를 조건으로 더 많은 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10.6 PMA가 관할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PMA는 신청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서신을 발행해야 한다. 서한은, 아하간에는, 이전의 통신과 관련하여,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10.6.1 신청자명

10.6.2 신청자 카테고리

10.6.3 적격 제품

10.6.4 인정 날짜

10.6.5 승인 날짜

10.6.6 인도에서 제조된 상품의 누적 누적 투자액과 순증가액 판매액에 대한 문턱값(Scheme Target Segment)에 따라 적용되며, 적격성 판단에 적용된다.

10.6.7 적격 투자 기준(2021년 3월 31일 기준)

10.6.8 인도에서 제조된 상품의 순매출기준은 1년차(2019년 4월 01일~2020년 3월 31일 기간) 계획대상 부문에 포함되었다.

10.6.9 전체 계획 기간의 적격 인센티브에 대한 총 한도이다.

10.6.10 관할 당국이 규정한 기타 모든 정보/조건.

11 인센티브 산정

승인된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한다.

해당 연도의 해당 제품의 순 증분 판매 x 인센티브 비율
어디서

(i) 해당 제품은 승인 서면에 명시된 바와 같다.

(ii) 판매된 상품의 반환을 포함한 목적으로 발행된 신용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순매출액은 해당 신용장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소한다. 만약 해당 판매가 이미 이전 기간의 클레임 처리를 위해 고려되었다면, 판매된 상품의 반품에 대한 신용장은 순매출액으로 조정된다. 실제 판매 수익률이 발생한 기간의 판매이다.

(iii) 각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연간 한도는 2021년 2월 24일에 통지된 제도의 조항 10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12 인센티브 지급

12.1 이 제도에 따른 인센티브 청구에 대해서는 신청자는 인센티브 지출 청구서를 PMA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모든 측면에서 보험금 청구가 완료되었고 제도에 명시된 형식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문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2.2 신청자는 해당 청구가 해당하는 회계연도 종료 후 인센티브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되,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여야 한다.

12.3 PMA는 신청자가 제출한 지출 청구서를 검토한다. PMA는 본 지침에 명시된 방법과 신청인에게 발급된 승인서에 기초하여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확인하고,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12.4 PMA는 다양한 부처/부서/기관에 제공된 법정 감사 인증서 및 반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센티브 청구와 관련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PMA는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감사인의 증명서, 은행명세서 등을 통하여 매출과 투자에 상응하는 최종 실현 및 정산/지급액을 심사할 권리를 가진다.

12.5 자격 및 인센티브 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거나 직무와 책임을 이행할 때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 PMA는 관할 기관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 당국의 결정이 최종 결정될 것이다.

12.6 PMA는 인센티브 지급 청구를 처리하고 관할 당국에 적절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 12.7 관할 당국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PMA가 검토 및 권고하는 지출 청구를 고려할 것이다.
- 12.8 DoT는 신청인의 모든 사전 해산 수속 및 관할 당국의 승인을 득한 후 자금을 지출한다. 제12.10조에 따라 조정 증서의 제출 기일은 당해 연도에 승인된 청구권 금액의 85%로 제한된다.
- 12.9 인센티브 지급은 PFMS를 통한 직접은행 이체 형태로 진행된다.
- 12.10 신청자는 매 회계연도 3월 31일자로 당해 공산품의 순증가판매조정서를 제출하여 다음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판매된 상품의 반환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발행된 신용장 조정을 받아야 한다. 씨알의 해 명시된 화해 성명서는 명시된 형식에 따라 12월 31일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 12.11 PMA는 조정서류/증명서를 확인하고 DoT에 잔액적격청구의 지급을 권고한다.
- 12.12 DoT는 관할 당국의 승인에 기초하여 신청자에게 당해 연도의 잔액 청구서를 지출할 것이다.
- 12.13 초과 청구액이 지출되는 경우, 신청자는 매년(신청자가 초과 지급한 기간과 환불한 날짜 사이의 기간 동안) 지출일에 만연된 SBI MCLR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환급 가능한 인센티브 금액을 DoT에 변제해야 한다.
- 12.14 만약 PMA 또는 관할 당국이 잘못된 정보의 본질적 사실 또는 제공에 대한 잘못된 전달로 인센티브의 지급에 따른 자격이 획득되었다고 만족하는 경우, 관할 당국은 신청자에게 인센티브에 대한 환불과 함께 3년간의 SBI MCLR에 대한 이자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6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신청자에게 청취 기회를 준 후 매년 (신청자가 지불한 기간과 환불한 날짜 사이의 기간) 복합 지출 날짜이다.

12.15 DoT는 이 계획에 따른 인센티브 분산을 위한 예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PMA는 매년 예산 요건을 통합 금액으로 DoT에 제출할 것이다.

12.16 PMA는 분기별로 인센티브에 대해 접수된 지출 청구 내역, 권장/지출 금액, 인센티브 추천 거부 사유/지연 사유 등을 도티에 제공해야 한다.

13 검토 및 모니터링

13.1 EGoS와 별도로, DoT가 구성할 운영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를 실시하여 이 계획에 따른 투자, 고용 창출, 생산 및 부가가치 관련 적격 기업의 진행 상황을 감시한다.

13.2 승인된 모든 신청자는 본 계획에 제공된 형식으로 매 분기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형식으로 자체 인증 분기별 검토 보고서(QR)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인센티브 청구는 신청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기간의 모든 QRR을 제출한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14 . 기술 위원회(TC): 상기 2.26조에 정의된 기술 위원회는 PMA/DoT/EGoS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TC는 PMA/DoT가 언급한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

15.잔여


15.1 신청자는 이 제도에 따라 더 높은 인센티브를 주장하기 위해 그룹 회사로부터의 판매 전환이나 인도 내 기존 유닛의 폐쇄로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없다.

15.2 특정 제조 품목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자가 인센티브를 청구할 수 없다. 각 청구 시점의 지정된 형식에 따라 이 효과에 대한 적절한 선언을 신청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15.3 신청인은 기업등기부(RoC)에 갱신한 후 당해 연도 중 주식보유패턴에 변동이 있을 경우 매년 인센티브 청구와 함께 최근 주식보유패턴을 PMA에 제출해야 한다.

- 15.4 제2.25조에 정의된 지분후계자로 이어지는 신청인의 주식보유패턴의 변경이나 제도 존속기간 중 회사의 성격변화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국내 또는 글로벌 또는 그 반대)는 관할당국의 인가를 받아 인센티브 해제를 검토하게 된다.
- 15.5 후임자가 이해관계에 있거나 회사의 성격에 변화가 있는 경우, 본 제도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수행하는 모든 증분 투자는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며, 이는 관할 당국이 규정한 다른 조건에 따라 승인되고 준수될 수 있다. 적절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의 후임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선은 제도에 따라 승인이 동의된 신청자에 대해 결정된 기준선과 동일하다.
- 15.6 정부에 의해 산업계에 지출되는 재정 문제에서 어떤 잘못된 관행을 피하기 위해, 그것은 투명성과 형평성 증진을 위한 부패 관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절차에 관련된 민감성을 파악하고 조달 문제에 있어서 무결성 협약의 채택에 관한 중앙 경계 위원회의 지시를 인용하여 이 계획에 따른 신청자들로부터 사업을 얻기로 결정했다.
- 15.7 첫 번째 사업은 인센티브의 승인 또는 지급을 위해 신청 또는 청구가 고려 중인 모든 신청자가 제공해야 한다. 사업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의 신청이나 청구는 처리 및 고려되지 않는다. 청렴도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사업은 신청자가 인센티브 지출 청구서를 제출한 후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자금을 공개하기 전에 제공해야 한다. 인센티브의 해제는 상술한 사업이 제공될 때까지 보류한다.
- 15.8 이러한 업무는 CEO IDI 책임자가 적법하게 서명한 특정 형식으로 신청자가 제공해야 하며, 해당 지정에 대한 승인과 함께 이를 묘사해야 한다.
- 15.9 PMA에 할당된 모든 기능은 DoT로도 수행할 수 있다.

15.10 다양한 활동의 날짜와 일정은 DoT에서 별도로 지정할 것이다.



(라제쉬 쿠마르 파탁)
부국장(국제협력)
전화 번호:23717542

이메일: ddgic-dot@gov.in

뉴델리, 날짜: 2021년 6월 3일 복사

대상:

1. 인도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
2. 모든 주 I 연합 영토
3. 국무조정실
4. 국무총리실
5. 니티 아요그(NITI Aayog)
6. 인도의 감독관 및 감사관
7. 전기통신부 DCC 회원
8. 산업 협회
9. 프로젝트 관리 기관(PMA)
10. 내부순환



(라제쉬 쿠마르 파탁)
부국장(국제협력)
전화 번호:23717542

이메일: ddgic-dot@gov.in

부속서 1

지정된 통신 및 네트워킹 제품

일련번호	상품설명
1	핵심 전송 장비
	고밀도 파장 분할 다중화 (DWDM), 광 전송 네트워크 (OTN), 멀티 서비스 프로비저닝 플랫폼 (MSPP), 동기식 디지털 계층 (SDH), 패킷 전송 네트워크 (PTN) / 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 (MPLS), 기가비트 수동 광 네트워크 (GPON) / 차세대 패시브 광 네트워크 (NG-PON) 광 라인 터미널 (OLT), 디지털 마이크로 웨이브 라디오
2	4G/5G, 차세대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및 무선 장비
	4G / 롱텀에볼루션(LTE)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RAN) 기지국 및 핵심 장비; 5G RAN 기지국 및 핵심 장비; 에지 및 엔터프라이즈 장비; 액세스 및 백 홀의 무선 통신 장비
3	액세스 및 고객 시설 장비(CPE), IoT 액세스 장치 및 기타 무선 장비
	통합 통신 플랫폼, IP 멀티미디어 하위 시스템, 소프트 스위치, GPON 광 네트워크 터미널 (ONT), 무선 충실도 (Wi-Fi) 액세스 포인트 및 컨트롤러, LTE CPE, 5G CPE, 단거리 장치 및 관련 전자 장치 및 4G / 5G와 같은 신기술 / Fibre To The Home (FTTH) 등.
4	기업 장비: 스위치, 라우터
	스위치, 라우터, 인터넷 프로토콜(IP) 및 패킷 교환 및 라우팅 장치
5	기타 모든 제품 - EGoS가 결정한 대로

부속서 2통신

및 네트워킹 제품의 자격 기준

연도	점증적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	누적 투자(토지 및 건물 제외)	기준 연도에 대한 최소적격 증분 순매출 수	기준 연도에 따른 공산품의 최대 적격 증분 순판매 수
	(A)	(B)	(C)	(D)
MSMEs - 투자 최소 임계값 1억 루피				
1	7%	X의 20%보다 이상이나 같음	3*(X의 20%)	20*(X의 20%)
2	7%	X의 40%보다 이상이나 같음	3*(X의 40%)	20*(X의 40%)
3	6%	X의 70%보다 이상이나 같음	3*(X의 70%)	20*(X의 70%)
4	5%	X보다 이상이나 같음	3*X	20*X
5	4%		3*X	20*X
MSME를 제외한 최소 투자 임계값은 10억 루피				
1	6%	X의 20%보다 이상이나 같음	3*(X의 20%)	20*(X의 20%)
2	6%	X의 40%보다 이상이나 같음	3*(X의 40%)	20*(X의 40%)
3	5%	X의 70%보다 이상이나 같음	3*(X의 70%)	20*(X의 70%)
4	5%	X보다 이상이나 같음	3*X	20*X
5	4%		3*X	20*X
X = 2021-22년부터 4년 동안 회사 I에 의한 총 투자(MSME의 경우 최소 1억 루피 및 기타의 경우 10억 루피)				
인도 정부가 정의한 MSME = 마이크로, 중소기업				
# 제조2.20조에 정의된 대로				